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37
----------	-------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양부남 · 김영환 · 민병덕
민형배 · 박균택 · 서삼석
안도걸 · 이광희 · 전진숙
정진욱 · 조인철 · 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업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① ----- ----- ----- -----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 「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제16조제3항에 따른 <u>지역사랑상품권기금</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